

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

단재교육원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"단재교육원설치조례"를 "충청북도단재교육원설치조례"로 한다.

제5조제1항중 "총무부, 교학부, 연수부, 지도부"를 "교학부·연수부·지도부 및 총무부"로 하고, 동조 제2항중 "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, 교학부장, 연수부장,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"을 "교학부장·연수부장·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,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"으로 한다.

제7조를 제10조로, 제8조를 제7조로, 제9조를 제8조로,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